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수급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자 함. 이에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기존 최근 2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규정(별표 2의 제1호 가목 일부개정)
- 나.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취소 규정(별표 2의 제2호 바목 개정 및 제3호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전
-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전단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제3호와 같음	등록취소		
--	--------------	---------	------	--	--

별표 2 제2호의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

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1차 위반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월평균 부당금액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u>40만원 이상</u> <u>80만원 미만</u>	<u>10</u>	<u>20</u>	<u>30</u>	<u>40</u>	<u>50</u>
<u>80만원 이상</u> <u>240만원 미만</u>	<u>20</u>	<u>30</u>	<u>40</u>	<u>50</u>	<u>60</u>
<u>240만원 이상</u> <u>840만원 미만</u>	<u>30</u>	<u>40</u>	<u>50</u>	<u>60</u>	<u>70</u>
<u>840만원 이상</u> <u>3천만원 미만</u>	<u>40</u>	<u>50</u>	<u>60</u>	<u>70</u>	<u>80</u>
<u>3천만원 이상</u>	<u>50</u>	<u>60</u>	<u>70</u>	<u>80</u>	<u>90</u>

나. “월평균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기간동안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text{부당청구액의 비율(\%)} = \frac{\text{총부당금액}}{\text{총수입금액}} \times 100$$

라.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포인트마다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포인트로 본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	법 제23조	등록취소			

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 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항제1호 법 제23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 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 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 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 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 지 않다.	법 제23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 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u>제3호와 같은</u>	<u>등록취소</u>		
마. 법 제19조제1항·제2항·제 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 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	법 제23조 제1항제6호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3.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 기준

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1차 위반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나. “월평균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기간동안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법 제19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담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 “부담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text{부담청구액의 비율(\%)} = \frac{\text{총부담금액}}{\text{총수입금액}} \times 100$$

라.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부담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포인트마다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포인트로 본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u>2년간</u>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이하 생략) 다.~라. (생략)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3">위반행위</th><th rowspan="3">근거 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의 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r><tr><td>위반</td><td>위반</td><td>위반</td><td>이상</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반	위반	위반	이상	[별표 2] 1. (현행과 같음)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u>5년간</u>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현행과 동일)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u>그중</u>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현행과 동일)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table><tr><th rowspan="3">위반행위</th><th rowspan="3">근거 법조문</th><th colspan="4">행정처분의 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r><tr><td>위반</td><td>위반</td><td>위반</td><td>이상</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반	위반	위반	이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반	위반		위반	이상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2차	3차	4차																								
		위반	위반	위반	이상																								

					위반
가.~마. (생략)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 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 조제1 항제5호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3)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영업	영업	등록	

					위반
가.~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 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 조제1 항제5호	<u>제3</u> <u>호와</u> <u>같음</u>	<u>등록</u> <u>취소</u>		
<u><삭 제 ></u>					
<u><삭 제 ></u>					
<u><삭 제 ></u>					
<u><삭 제 ></u>					

미만인 경우		정지 30일	정지 3개월	취소	
사.~아. (생략)					

※ 비고 (생략)

<신 설>

사.~아. (현행과 같음)					
----------------	--	--	--	--	--

<삭 제>

3.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기준

가.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1차 위반한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신 설>

<신 설>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u>10</u>	<u>20</u>	<u>30</u>	<u>40</u>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u>10</u>	<u>20</u>	<u>30</u>	<u>40</u>	<u>50</u>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u>20</u>	<u>30</u>	<u>40</u>	<u>50</u>	<u>60</u>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u>30</u>	<u>40</u>	<u>50</u>	<u>60</u>	<u>70</u>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u>40</u>	<u>50</u>	<u>60</u>	<u>70</u>	<u>80</u>
3천만원 이상	<u>50</u>	<u>60</u>	<u>70</u>	<u>80</u>	<u>90</u>

나. “월평균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기간동안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

<신 설> <신 설> <신 설>	<u>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 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u> $\text{부당청구액의 비율(\%)} = \frac{\text{총부당금액}}{\text{총수입금액}} \times 100$ 라. <u>“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제공자가 해당 사업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거나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u> 마. <u>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퍼센트포인트마다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포인트로 본다.</u> 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본다.</u>
--	---